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628
----------	------

2021년 9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1일 김경 의원의 1명(찬성 21명)
2.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9월 7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경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온라인상에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성상 피해 영상물 등이 광범위하게 유포·공유되는 문제로 인해 온라인 상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유

발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N번방 사건으로 시민들을 공분에 빠뜨린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11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피해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의규정(안 제2조)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핵심용어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시장의 책무(안 제3조)로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등을 명시하고,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지원사업 추진 및 신고체계 마련(안 제7조~안 제8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0조),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안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12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계획의 수립) 제5조(실태조사)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사업) 제8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사무의 위탁) 부 칙
--------------------------------------------------------------------------------	-----------------------------------------------------------------------------------------------

2 주요사항 검토

□ 총칙 규정(안 제1조~제3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용어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의 빠른 확산, 2차 피해의 심각성 등의 반영구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범죄 유형보다 절실하며, 반영구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또한 정의규정에서(안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부터 제14조의3¹⁾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에 관한 법률」 제11조²⁾를 근거로 디지털 성범죄를 폭넓게 규정

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하여, 동 조례에서 예방 및 방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안 제6조)

-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여성폭력방지 정책과의 통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성 및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³⁾에 따라 수립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하였음.
- 또한 정책수립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의 범위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⁴⁾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

3)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는 조사로 ‘성폭력’과 ‘디지털성범죄’는 그 내용이나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단서 조항(안 제5조제1항)은 삭제
가 무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법·제도의 개선(안 제4조
제1항제1호)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법을 개선
하는 것은 사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제도
의 개선’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신고체계의 마련(안 제6조)

- 제정안은 시민들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성착취물 등을 신
고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상에서 유통·배포되는 디지털 성
착취물의 특성 상,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
다 할 것이나, 개별 지자체에서 별도로 신고하던 것을 아동학대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신고·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12로 일원화한 사례를 고려할 때 서울시만 단독 신고체계
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온세이프넷을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
죄 신고 상담 창구(카카오톡 연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750명)으
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여 SNS 등 기
업 신고시스템을 점검하고, 불법촬영물을 신고하는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 또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을 통해 별도의 긴급전화 상담 전화(02-2275-2207)를 운영 중임.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안 제7조)

- 조례안(안 제7조제1항)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각 호로 개별 사업들을 규정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안 같은조제2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제2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제3호),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제4호),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제7호)의 사업은 기 추진 중에 있음.

번호	사업	추진현황
제1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제2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디지털 성범죄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제3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디지털 성범죄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제4호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디지털 성범죄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제5호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6호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제7호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시민 참여 캠페인, 종합정보 플랫폼 운영 등

번호	사업	추진현황
제8호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제1호)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의 삭제 요청·삭제 완료 확인·모니터링 등 유포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 내 지원 조치 전반을 의미하는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5제1항제3호6)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단체로 지정되어야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디지털 성범죄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나무여성인권상담센터’가 2021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2021년 1월에 지정되어 해당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음.

- 향후 지정 단체나 기관에 예산지원을 통해 삭제 지원 사업을 추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전문인력 양성은 서울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전문인력 양성 지원’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안 제8조)

- 조례안은 안 제7조제1항에서 명시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미 안 제7조제2항에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⁷⁾를 근거로 이미 관련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7)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미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조직인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등에 있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또한 최근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온라인그루밍 등 신종 여성폭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여성폭력은 단독 발생보다는 복합·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폭력 방지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경찰청 및 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아동·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맞춤형 사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및 안전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지원센터 등과 같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함.
- 지난 2019년 12월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5개 기관이 공동협력협약을 맺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9조)

- 조례안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나 개인의 은밀한 영상 및 사진 등을 다루게 되는 만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민간위탁(안 제11조)

- 조례안은 안 제7조제1항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과 안 제8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는 현행 보조금 사업이 매년 사업공모를 통해 추진되어 연간 10개월 내외만 시행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등에서 사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음.

3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센터 설치의 필요성이나 일부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할 것임.

※ 참고자료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현황

번호	단계	사업 내용	운영실적
1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아이두 캠페인' 운영	- '온서울세이프(On Seoul Safe)' 내 캠페인 창구 운영 - 이수정 교수, 서지현 검사, 배우 봉태규, 임순례 감독 등 사회저명인사 캠페인 동참 - 디지털 성범죄 예방 5계명 서약 18만명 참여
2		초, 중학생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 전국 최초, 초, 중학생, 학부모 등 서울시내 350개 학급, 1만 1천명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운영 - 초, 중학생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교사 매뉴얼 2종 개발 및 전문강사 40명 양성
3		디지털 성범죄 종합 플랫폼 '온서울세이프' 운영	- 전국 최초, 디지털 성범죄 종합 플랫폼 구축 -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유포, 협박 등 관련 종합정보, 교육자료 등 제공 -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피해 상담 등 제공
4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운영	- 전국 최초,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 : 750명 운영 - SNS 등 기업 신고시스템 점검 등 - 불법촬영물 등 신고 : 6천건('19년도)
5	조기 개입	아동, 청소년 긴급 신고 상담창구 운영	- 전국 최초, 아동, 청소년 대상 '온서울세이프' 내 신고, 상담 창구 운영('20.10월~) - 카카오톡 연계를 통한 아동, 청소년 신고 및 상담 운영 - 디지털 성폭력 유형별 지원방안 등 정보제공
6		고위험군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 전국 최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등을 통한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20.6월~) - 전문상담가를 통한 정보제공 및 상담 : 총 350건 - 운영단체 : (사)탁탄내일
7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 전국 최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지 동반자' 4명 선발, 운영

번호	단계	사업 내용	운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동행, 채증 지원, 법률 소송지원 등 1:1 동행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총 4,721건('19~) - 운영단체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8	가해자 재발 방지	초, 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초, 중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및 상담(10회기) 운영 - 학교 징계명령 청소년 등 대상 온, 오프라인 상담 - 가해자 재발방지 상담 및 교육 : 1,124명 - 운영단체 :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사업 추진 방식의 행정효율성 및 사업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 및 서울시의 사무 및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사항을 수정함.

2. 수정안 주요 내용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별도로 규정함.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28
----------	------------

제안년월일 : 2021년 9월 7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사업 추진 방식의 행정효율성 및 사업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 및 서울시의 사무 및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사항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별도로 규정함.(안 제8조).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4호 중 “법·제도”를 “제도”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안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7.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1조제1항 중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디지털성범죄 관련 <u>법·제도</u> 개선</p> <p>5.·6. (생략)</p> <p>②·③ (생략)</p>	<p>제4조(계획의 수립) ① ----- ----- ----- -----.</p> <p>1. ~ 3. (원안과 같음)</p> <p>4. ----- <u>제도</u> ----- --</p> <p>5.·6. (원안과 같음)</p> <p>②·③ (원안과 같음)</p>
<p>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u>이 경우 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성폭력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u></p> <p>② (생략)</p>	<p>제5조(실태조사) ① ----- ----- ----- --. <u><후단 삭제></u></p> <p>② (원안과 같음)</p>
<p>제7조(사업) ① <u>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u></p>	<p>제7조(사업) <u>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u></p>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7.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7.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

제7조-----

-----.

②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책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3.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관련 제도 개선
5.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7.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제기구나 외국

의 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